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9. 9. 28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9. 9. 2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99. 10. 9)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자

(제안설명자 : 건축과장 민천식)

가. 제안이유

○ 99.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 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 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 지방의회의 사전의결로 보증채무를 동의코자 함.(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

나. 주요골자

○ 99.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다음과 같이 동의함.

가. 자금명 :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금

나. 지급보증금액 : 금회배정 2,500백만원

다. 지급보증대상자 : 전세융자금 융자대상자

라. 융자금지급 : 한국주택은행(부천지점, 역곡지점, 원종지점, 심곡지점, 고강지점, 소사지점, 부천 남지점 등)

마. 상환방법 : 2년 내 전액 일시상환

바. 이율 : 연리 3%

사. 지급보증기간 : 2년 간(단, 전세 제계약으로 인한 연장신청자 1회 연장가능)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금회에 배정된 금액으로 몇 가구에 얼마씩 융자를 해주는가?	○ 1가구당 천만원씩 250가구에 융자금이 지급됨.
○ 융자금의 결손 방지를 위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 융자금의 결손 방지를 위하여 세입자의 집 주인이 보증토록 하여 무단전출시 전세보증금에서 상환토록 하고, 각 동에 지시하여 개인별 카드에 융자대상자를 명시 전출시 확인토록 조치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의안번호	제219호
의결년월일	99. 10. 12 (제73회)

제출년월일 : 1999. 9. 2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1. 제안이유

99.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 지방의회의 사전의결로 보증채무를 동의코자 함.(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

2. 주요골자

99.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다음과 같이 동의함.

가. 자 금 명 :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금

나. 지급보증금액 : 금회배정 2,500백만원

다. 지급보증대상자 : 전세융자금 융자대상자

라. 융 자 금 지 급 : 한국주택은행(부천지점, 역곡지점, 원종지점, 심곡지점, 고강지점, 소사지점, 부천남지점 등)

마. 상 환 방 법 : 2년 이내 전액 일시상환

바. 이 율 : 연리 3%

사. 지급보증기간 : 2년 간(단, 전세 계약으로 인한 연장신청자 1회 연장가능)

3. 제안본문

제목 : 99.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

가. 목 적

- 도시 영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함

나. 지원방법

○ 융자대상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 중
- 전세금 2,000만원 이하인 전세입자

○ 융자지원 규모 및 가구당 지원액

- 금회배정액 2,500백만원, 가구당 지원액 1,000만원

○ 대출금리 : 연리 3%(본인부담)

○ 상환조건

- 2년 이내 일시상환(전세 재계약시는 1회에 한하여 연기가능)
- 자금관리 :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 설치 관리

다. 융자실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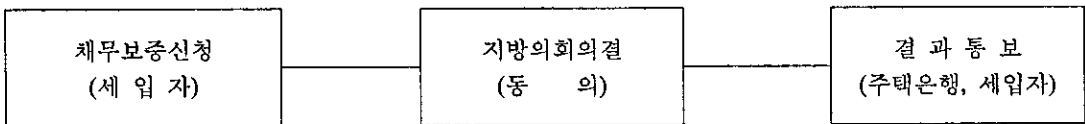
○ 융자업무 취급기관 : 주택은행부천지점 외 9개 점포

○ 융자계약 체결

- 계약당사자 : 지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
- 보증인 :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에 융자신청
-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체적 보증

라. 채무이행 보증절차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 채무보증 내용

- 전세자금 융자금 상환의 장기간 연체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손 보존 문제가 발생될 경우로서
- 주택은행의 독촉장 발부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회수 가능 여부를 관할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서 채무 관계자를 직접방문 확인한 후
-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결손을 보전토록 하고

- 부친사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마. 기타사항

-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 중 용자금분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고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상환하며
- 동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용자금 및 이자납입 상환실태, 주거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함.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부친시장 귀하

주채무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2. 내 용

가. 채권자 : 주택은행장

나. 채무액 : 백만원

다. 이자율 : 연 3%

라. 상환기간 : 자 1999. . 지 2001. 12월 2년 간(1회에 한하여 연기계계약)

마. 상환계획 : 2년 이내 일시상환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입자를 돕기 위함

나. 시보증이 필요한 사유 : 저소득세입자에게 전세자금 융자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에서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에서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채무보증동의통지서

귀하

부천시장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에서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 1. 주채무자 :
- 2. 채무건명 :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금
- 3. 채무액 : 만원
- 4. 이자율 : 연 3%
- 5. 상환기간 : 자 1999. 자 2001. 12월 (1회에 한하여 연기 재계약)
- 6. 상환재원 : 신청자부담 - 원금, 상환이자의 3%
- 7. 융자재원 : 2,500백만원
- 8. 관계기관 : 한국주택은행
- 9. 채무보증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10. 준수사항

-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다.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라. 채권자는 시에서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에서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바. 융자금지급기간은 99. 12. 30일까지임을 유념하시어 동기간 내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합니다.